

1. 제정이유

「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(법률 제17423호, 2020. 6. 9. 공포, 2021. 6. 10. 시행)됨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·운영기관 지정기준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·운영기관 지정기준(안 제2조)

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·운영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기준 등(별표1)

나.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·운영기관 지정취소 기준 등(안 제3조)

설치·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(별표2)

다. 제한행위 허가신청서(별지 제1호) 및 매수청구서(별지 제2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·운영 등

제2조(설치·운영기관 지정기준 등) ① 환경부장관은 「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6조에 따라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(이하 “설치·운영기관”이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「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4조제2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·운영기관을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·운영기

관으로 대체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·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고시해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설치·운영기관은 매년 운영계획과 운영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3조(설치·운영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) 설치·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.

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

제4조(제한행위의 허가신청서) 영 제14조제1항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신청서”란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말한다.

제4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·관리

제5조(매수청구서) 영 제1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”란 별지 제2호의 서식을 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

설치·운영기관의 지정기준(제2조제2항 관련)

1. 시설 및 장비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별표 7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거나 확보할 계획을 갖출 것

2.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.

가. 소각시설

- 1)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
- 2)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
- 3) 일반기계기사 1명
- 4) 시공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(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- 5)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천정크레인을 1년 이상 운전한 자 1명과 천정크레인 외의 처분시설의 운전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(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
나. 매립시설

- 1)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
- 2)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중 1명
- 3) 토목기사 1명
- 4) 매립시설(9,900 제곱미터 이상의 지정폐기물 또는 33,000 제곱미터 이상의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)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

다. 재활용시설

- 1) 폐기물처리기사 1명
- 2) 수질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
- 3) 기계정비산업기사 1명
- 4) 1일 50톤 이상의 재활용시설(위탁대상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만 해당한다)의 시공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(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- 5) 1일 50톤 이상의 재활용시설(위탁대상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만 해당한다)

다)의 운전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(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
비 고 : 제2호 각 목 1)부터 3)까지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각 목 4) 또는 5)의 경력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공 또는 운전 분야의 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
설치·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(제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(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)를 적발한 날로 한다.

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다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,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지정취소인 경우(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.

- 1)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
		1차	2차	3차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6조제2항제1호	지정 취소		

2) 업무정지기간 중 공공폐 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한 경 우	법 제6조제2항 제2호	지정 취소		
3)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 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법 제6조제2항제 3호	시정 명령	업무 정지 3개월	지정 취소
4)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폐자원관리 시설 설치·운영기관으로서 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	법 제6조제2항제 4호	시정 명령	업무 정지 3개월	지정 취소

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5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성 명(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	생 년 월 일 (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)
	주 소 (전화번호: / Email:)	

허가 신청 사항	위치(지번)	지목
	용도지역	용도지구

허가 신청 내용	토지형질 변경	토지 현황	기울기	토 질		
			토석 매장량			
		입목 식재 현황	주요 나무 종류			
			입목지	무입목지		
		신청면적	㎡			
	입목벌채	나무 종류	나무수	그루		
	건축물건축	면적	(대지/건축)	㎡	연면적	㎡
		건축물종류/용도		구조/층수		
	공작물설치	신청면적	㎡		무 게	
		공작물 구조		부 피		
	토석 채취	신청면적	㎡		부 피	
	토지분할	종전면적	㎡		분할면적	㎡
	물건야적	무 게			부 피	
		품 명			평균야적량	
		야적기간	년 월 일부터		년 월 일까지(개월간)	
	기 타					
	개발행위의 목적					
	사업기간	착 공	년 월 일		준 공	년 월 일

「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서의 제한행위를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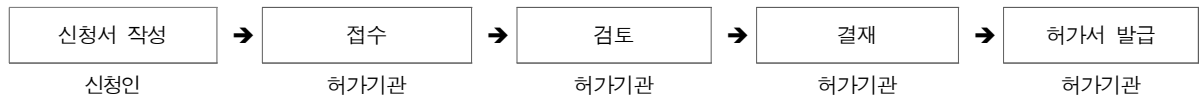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(뒤쪽)

첨부서류	1.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행위에 관한 사항 또는 사업계획서 2. 공사시행계획서 3.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지형도면	수수료
------	--	-----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 <신 설>

[] 이주지역 토지 등
[] 폐기물처리시설 등

매수청구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
매수 청구인 (소유자)	성명(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)	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
	주소(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)			
	전화번호		E-mail	
청구 내용	토지에 관한 사항	소재지		면적(㎡)
		지번·지목		이용현황
	토지에 있는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	종류(용도)	소각시설 용량(톤/일)	매립시설 용량/잔여 용량(㎡)
		연면적(㎡)	층수	사용년수
	소유권 외의 권 리에 관한 사항	소유권 외의 권리의 종류, 내용,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		
	매수청구사유			

「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 []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주지역으로
결정된 지역에 있는 토지·건축물 등의 []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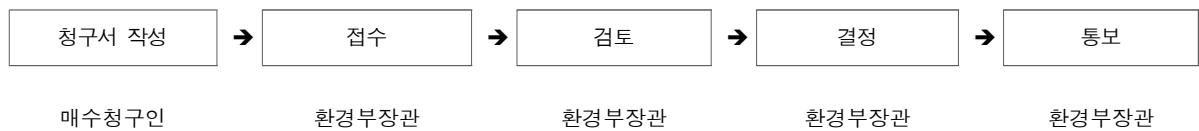
매수를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매수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환경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이주지역 토지 등 매수청구의 경우 가. 매수청구 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. 매수청구 대상 토지 등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이용현황, 권리설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폐기물처리시설 등 매수청구의 경우 가.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.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이용현황, 권리설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. 매수청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.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전체 내용을 기재한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